

2. 共同住宅 管理規則 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4-175號

1. 개정이유

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각종 서식을 정비하며,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장·군수는 공동주택단지내 경비원에 대한 방법교육을 연 2회 실시하되 매회별 교육시간은 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, 교육실시 14일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교육일시 및 교육방법 등을 통보하도록 함.
- 나. 시장·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기와 해빙기를 대비한 정기점검과 태풍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점검결과 구조의 안전도가 취약한 것은 특별관리 하도록 하여 재해예방 도모
- 다. 입주자공유시설중 주차장, 조경시설,

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등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신·증축이 가능하도록 함.

- 라. 공동주택을 인근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때에는 공동관리하는 규모가 1,000세대를 넘지 않고 3개단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.

3. 의견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: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
- 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 주택국 주택관리과에 문의(전화 503-7362)